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사회재난의 유형에 북한의 각종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접경지역의 피해 등 추가〉
■ 박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224호)

2025.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문위원 서기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박정의원 등 14인
2. 발의연월일 : 2024. 12. 5.
3. 회부연월일 : 2024. 12. 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하고, 화재·붕괴·폭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등을 사회재난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북한의 저수지 방류로 인한 접경지역의 수해 피해 등 남북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피해가 재난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아 대비 및 보호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북한의 각종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접경지역에서의 피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해를 사회재난의 범위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나목).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사회재난의 유형에 ‘북한의 각종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접경지역 피해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나목).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 -----.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1. ----- ----- -----.
가. (생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다중주택인파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	나. ----- ----- ----- ----- ----- ----- ----- ----- ----- ----- -----

현행	개정안
먼지, 「우주개발 진흥법」 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추 락·충돌 등으로 인한 피해	----- ----- -----인한 피해, 북한 의 각종 행위로 인하여 발 생하는 접경지역 피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해
2. ~ 13. (생략)	2. ~ 13.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재난을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발생원인에 따라 자연적 현상에 의한 자
연재난과 사회적·인위적 현상에 의한 사회재난으로 나누어 규정¹⁾하면
서, 사회재난의 유형으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등을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매년 집중 호우가 발생하는 시기에 북한 지역에 위치한 임
진강 상류 황강댐에서 사전 통보 없이 무단으로 방류하는 행위로 인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
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
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
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하여 북한 접경지역 주민들의 수해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사회재난의 유형에 ‘북한의 각종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접경지역 피해 등’을 포함하여 그로부터 접경지역 주민들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다만, 행정안전부는 국가위기관리체계상 법령체계 운영 기준을 고려할 때, 개정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행정안전부는 우리나라의 국가위기관리체계는 “안보” 분야²⁾와 “재난” 분야³⁾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고, ‘적(북한)의 도발·위협’ 등에 관한 사항은 “안보” 분야로 분류하여 법령체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북한의 댐 무단 방류와 같은 행위는 북한의 도발·위협 행위에 포함되므로 “안보” 분야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재난” 분야의 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사회재난의 범위에 포함할 경우 기존의 법령체계, 대응 방식, 그동안의 적용 사례 등에 비추어 국가 차원의 지휘체계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49

2) 「통합방위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전시법령 및 안보 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등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재해구호법」, 감염병·가축전염병 등 사회재난 관련 개별 법령 및 재난 분야 위기관리 매뉴얼